채 권 양 수 도 계 약 서

본 채권양수도계약서(이하 "본 계약(서)")는 2019년 5월 [/이일 아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었다:

주식회사 정밀(이하 "양도인"); 그리고

주식회사 바른크라우드대부(이하 "양수인");

제1조 (용어의 정의)

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호 기재 의미를 가진다.

1. **"계약 당사자"**라 함은 본 계약상 당사자인 주식회사 정밀, 주식회사 바른크라우드대부 각자 또는 모두를 말한다.

2. **"금융계약"**이란 대출약정(서), 본 계약서, 연대보증계약서 및 그에 따라 또는 그에 부수하여 작성되는 계약서 및 기타 부속서류 일체를 말한다.

3. **"대출약정(서)"**이라 함은 차주인 주식회사 정밀의 산업용 계량시스템, 포장, 충전기 및 기타 전자부품을 제작, 판매하는 업체로, 기업에게 상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결제받는 사업(이하 "본건 사업")과 관련하여 차주인 주식회사 정밀, 대주인 주식회사 바른크라우드대부 사이에 2019년 5월 [/이일자로 차주에게 소요되는 금일억오천만원(₩150,000,000)의 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체결된 대출약정(서)을 말한다.

4. **"양도채권"**이라 함은, (1) 대출약정(서)에 따른 대출약정금 금일억오천만원(₩150,000,000)의 대출채권과 그에 대한 발생이자 및, (2)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 권리, 권한, 계약상 지위를 말한다.

5. **"채무자"**라 함은 미 석유공업 주식회사(법인등록번호)를 말하며 **"양도대상채권"**은 별지1.에 기재한 바와 같이, 양도인과 미 석유공업 주식회사(법인등록번호) 사이에 2019년 4월 2일자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미 석유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말한다.

6. 기타 본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 중 본 계약서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

확정일자 제 43103 호

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의 당사자는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서명권자로 하여금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, 보관하기로 한다.

양수인

법 인 명	주식회사 바른크라우드대부
대 표 이 사	안 재 영 (인)
주 소 지	서울 강남구 언주로 428, 10 층 (아비스타빌딩)
사업자등록번호	634 – 81 - 00573
대부업등록번호	2018 – 금감원 - 1482

양도인

법 인 명	
대 표 이 사	(인)
주 소 지	
법인등록번호	

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(주) 정밀 대표이사

[확정일자 인]

별지 1.

양도대상채권 목록

목록	결제일정	금액	지급시기	공사대금 수령계좌
미ㅣ석유공업㈜ (법인등록번호 :) 공사대금채권	중도금	금이억구천만원 (₩290,000,000)	설비입고 완료시 (7월말예정)	
	잔금	금일억일천육백만원 (₩116,000,000)	시운전검수 완료후 (8월2째주예정)	

*공사도급계약서 첨부